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23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 조직개편(2019.7.25.)을 반영하여 찾동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실·본부·국장을 마을공동체 분야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6조).
- 그 밖에 오기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협의완료.
- 입법예고 (2019. 8. 16. ~ 9. 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조직 개편(2019.7.25.)에 따라 찾동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실·본부·국장(5인)을 마을공동체 분야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5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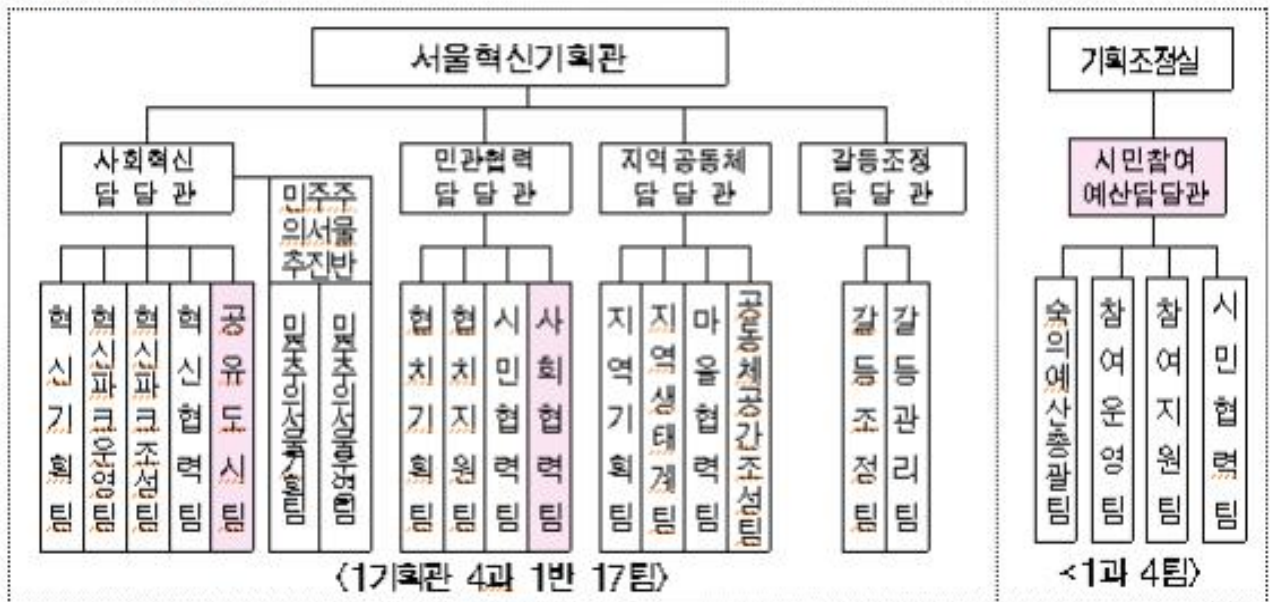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②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 (행정, 마을공동체, 여성, 복지, 건강) 분야의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장은</u>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u>위원장은</u>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제116조1) 및 제116조의22))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구성 직위의 변경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1)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찾동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 5개 실국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합의제 기구로써 서울시의 잦은 조직 개편이 발생할 경우 위원의 직위 등이 불가피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바, 위원회 운영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위원회 운영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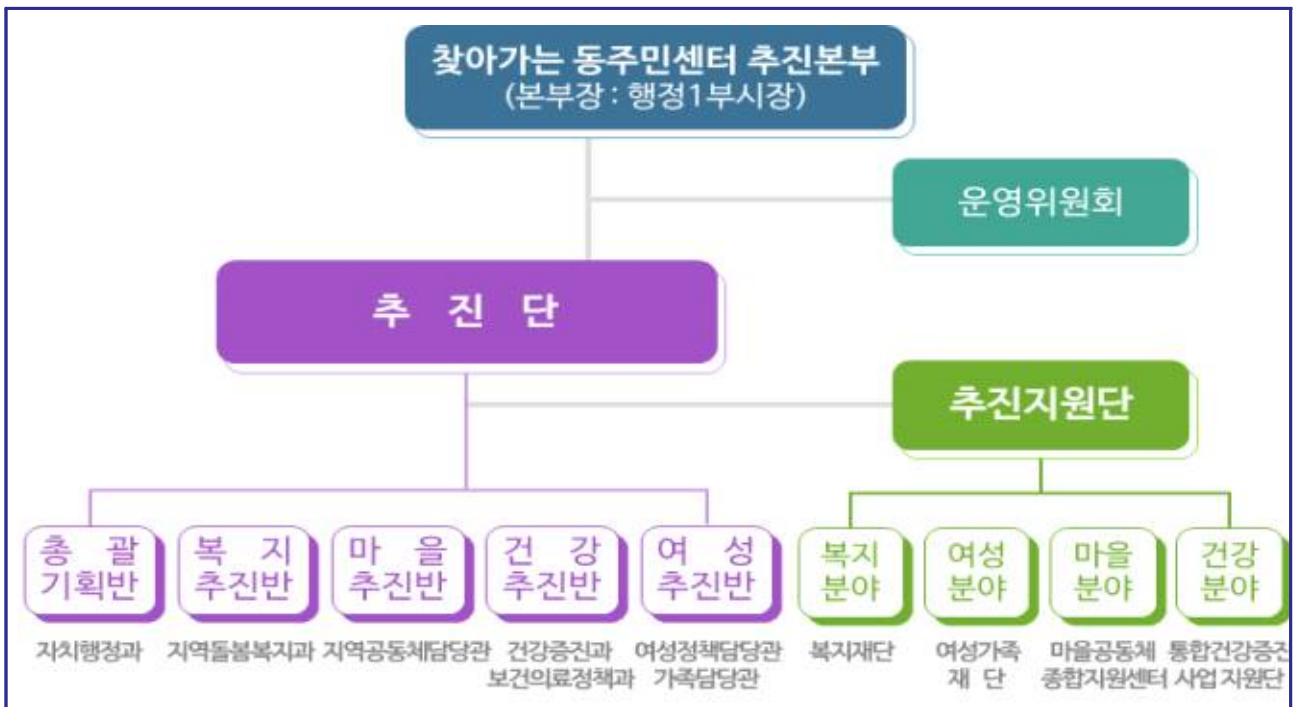
□ 조직개편 사항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개요

- 구 성 : 총 25명 이내 (위촉직 20, 당연직 5)
 - 위촉직(20) : 전문가 14, 부구청장 4, 서울시의원 2
 - 당연직(5) : 행정국장,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찾동 운영 조례」 제6조 제5항)
- 임 기 : 2년 (위촉일로부터 2년, 2회 연임 가능)
- 회 의 : 분기별 1회 이상
- 역 할 :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 찾동 기본계획, 정책 성과관리, 주요 정책 관련 사항 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본부 체계도 〉



※ 행정국은 조직개편('19.7월)에 따른 조례 개정('19년 290회 정례회, '20.1월 공포 예정)완료 후, 서울혁신기획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
<p>【당연직 : 5명】 : 서울시 실·국·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u>서울혁신기획관</u>, 행정국장, 시민건강국장 	<p>【당연직 : 5명】 : 서울시 실·국·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u>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장</u>, 행정국장, 시민건강국장

- 서울시의 찾동 사업 추진은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서울시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자문 기구로 '찾동 운영위원회'를 복지·보건·마을분야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총 25명)하여 자문과 심의를 통해 '찾동 추진본부'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운영해 오고 있음.
- 찾동 사업추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동 조례(제5조 기본계획)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간 유사·중복적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찾동 운영위원회 운영시 두 조례간의 중복적 규정에 따른 우선 순위 적용의 어려움과 혼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발 의 자 : 김혜련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발 의 일 : 2019년 5월 24일
○ 의 결 일 : 2019년 6월 28일
○ 제안이유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목적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소속감을 확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생활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에 목적
○ 주요골자 :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하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마련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찾동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제6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p>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3. 주요 성과 분석 및 평가 4. 소요 자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	-------------------------------------------------------------------------------------------------------------------------------------------------------------------------------------------------------------

참고자료 **찾동 운영위원회 개요**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찾동 운영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관련 지침

위원회 운영

- 구 성 : 총 25명 이내 (위촉직 20, 당연직 5)
 - 위촉직(20) : 전문가 14, 부구청장 4, 서울시의원 2
 - 당연직(5) : 행정국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찾동 운영 조례」 제6조 제5항)
- 임 기 : 2년 (위촉일로부터 2년, 2회 연임 가능)
- 회 의 : 분기별 1회 이상
- 역 할 :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 찾동 기본계획, 정책 성과관리, 주요 정책 관련 사항 등
- 회 의 : 운영위 1회, 소위 4회 개최 ('19.7~10월 현재)
 - ※ '19.11.20, 5차 회의 예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3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019. 7. 25.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찾동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실·본부·국장을 마을공동체 분야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6조)
- 나. 그 밖에 오기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2019. 8. 16.~ 9. 5.)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행정, 마을공동체, 여성, 복지, 건강) 분야의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② (생 략)</p> <p>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당연 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위촉한다.</p> <p>④ (생 략)</p> <p>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⑥ ~ ⑧ (생 략)</p>	<p>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행정, 마을공동체, 여성, 복지, 건강</u>) 분야의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장은 -----.</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과 이연정(02-2133-5834)